

영사확인 및 서명확인

1. 한국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영사확인
2. 태국인 개인 서류 복사본 확인
3. 태국인 개인 서류 번역본 확인
4. 태국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은 서류 확인
5. 태국인 본인 서명확인
6. 기타 서명확인

업무시간 공휴일 제외한 평일 09.00 -12.00 시, 13.00-15.00 시에 예약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 업무시간과 휴관일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 반드시 대사관 홈페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한국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영사확인

한국기관에서 발행된 서류를 주한 태국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하실 경우,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1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은 서류 원본과 전체 복사본 1 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3개월 이내 영사확인 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1.2 수수료: 서류 한 부 당 22,000 원 (현금) *카드/수표/계좌이체/기타 결제 방법 불가*

1.3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4 일 (우편수령은 1 주일 소요, 국내 발송만 가능)

1.4 업무시간 공휴일 제외한 평일 09.00 -12.00 시, 13.00-15.00 시에 예약없이 접수 가능

2. 태국인 개인서류 복사본 영사확인

해당 서류: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발급된 태국인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또는 태국 현지 구청 또는 관청에서 발급된 여권,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위에 항목 외의 서류는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이 불가능하며, 태국 현지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 **위조서류 또는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대사관에서 서류 인증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2.1 태국인 개인 서류 원본 및 복사본
 - 2.2 본인의 태국주민등록증 및 여권 복사본 각 1 장 씩
 - 2.3 본인의 태국주민등록증 및 여권 원본
 - 2.4 수수료: 도장 하나 당 22,000 원 (현금) *카드/수표/계좌이체/기타 결제 방법 불가*
 - 2.5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4 일 (우편수령은 1 주일 소요, 국내 발송만 가능)
 - 2.6 업무시간 공휴일 제외한 평일 09.00 -12.00 시, 13.00-15.00 시에 예약없이 접수 가능
- 대리인이 대신하여 진행할 경우, 태국 현지 구청/ 태국대사관/ 태국영사관에서 발행된 위임장 및 대리인의 태국주민등록증 제출 필요)

3. 태국인 개인서류 영문 번역본 확인

해당 서류: 태국인 여권, 주민등록증,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호적등본, 개명증명서

위에 항목 외의 서류는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이 불가능하며, 태국 현지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 **위조서류 또는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대사관에서 서류 인증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3.1 인증 받을 서류 원본 및 복사본

3.2 영문 번역본, 번역자의 서명 기재 필수

- 영문으로 된 번역본만 접수 가능하며, 기타 외국어로 된 번역본은 접수 불가능합니다.
- 영문 번역본은 태국 외교부의 번역 양식대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양식은 <https://consular.mfa.go.th/th/page/cate-1421-ตัวอย่างคำแปลแบบฟอร์มเอกสารราชการ> 사이트에서 참고

- 오역이 발견되거나, 외교부 번역양식 이외의 경우, 대사관에서 서류 인증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3.3 본인의 태국주민등록증 및 여권 복사본 각 1 장 씩

3.4 본인의 태국주민등록증 및 여권 원본

3.5 수수료: 도장 하나 당 22,000 원 (현금) *카드/수표/계좌이체/기타 결제 방법 불가*

3.6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4 일 (우편수령은 1 주일 소요, 국내 발송만 가능)

3.7 업무시간 공휴일 제외한 평일 09.00 -12.00 시, 13.00-15.00 시에 예약없이 접수 가능

- 대리인이 대신하여 진행할 경우, 태국 현지 구청/ 태국대사관/ 태국영사관에서 발행된 위임장 및 대리인의 태국주민등록증 제출 필요)

4. 태국 외교부에서 공증 받은 서류를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받기 구비서류

- 4.1 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은 서류 원본과 전체 복사본 1 부
(태국 외교부에서 3 개월 이내 영사확인 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 4.2 본인의 태국주민등록증 및 여권 복사본 각 1 장 씩
 - 4.3 본인의 태국주민등록증 및 여권 원본
 - 4.4 수수료: 도장 하나 당 22,000 원 (현금) *카드/수표/계좌이체/기타 결제 방법 불가*
 - 4.5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4 일 (우편수령은 1 주일 소요, 국내 발송만 가능)
 - 4.6 업무시간 공휴일 제외한 평일 09.00 -12.00 시, 13.00-15.00 시에 예약없이 접수 가능
- 대리인이 대신하여 진행할 경우, 태국 현지 구청/ 태국대사관/ 태국영사관에서 발행된 위임장 및 대리인의 태국주민등록증 제출 필요)
-

5. 태국인 본인 서명확인

태국인이 서명확인 필요하실 경우, 본인이 주한 태국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대리접수 불가능합니다. 각종 위임장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5.1 본인의 태국 주민등록증 및 여권 복사본 각 2 장씩
 - 5.2 본인의 태국 주민등록증 및 여권 원본
 - 5.3 수수료: 위임장 한 세트 당 22,000 원 (현금) *카드/수표/계좌이체/기타 결제 방법 불가*
 - 5.4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4 일 (우편수령은 1 주일 소요, 국내 발송만 가능)
 - 5.5 업무시간 공휴일 제외한 평일 09.00 -12.00 시, 13.00-15.00 시에 예약없이 접수 가능
-

6. 기타 서명확인

6.1 한국인 본인 서명확인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한국인의 본인 서명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서명확인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 공증사무소에서 서명사실확인서 공증 받은 후,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외교부 영사확인 받은 문서는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신청 후, 태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 번 참조)

6.2 한국국적 외의 외국인 본인 서명확인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태국국적 또는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의 본인 서명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서명확인 필요하실 경우, 한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서명확인 받은 후, 해당 국가에 있는 현지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고, 마지막으로 해당 국가에 있는 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아야 합니다.
